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14
------	-----

제출년월일: 2000.05.01  
제출자 : 서초구청장



### 1. 수정이유

공용 및 공공용청사의 건립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건립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한하고 본 조례(안)의 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 한하여,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조문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

나. 건립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운용

- 제5조(기금의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말한다.)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로 수정 (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정

-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안 제3조 제1항)

라. 기금운용의 관리를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신설

- 제16조(회계공무원)
  -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영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마. 위원회 위원에 구의원 포함

- 제8조(위원회구성)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안 제7조 제3항)

3.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2조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를 제3조로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제5조를 제4조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말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서초구공용청사등 건립부지매입
2. 서초구공용청사등 건립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제6조(위원회설치·운영)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공용청사동건립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를 제7조로하고 제3항, 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으로 한다

1. 당연직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 및 각국장
2. 위촉직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내지 제15조를 각각 제8조내지 제14조로 변경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 ③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타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명: <u>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 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u>	제명: <u>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u>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u>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을</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삭제)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에 <u>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u> (이하 “기금”이라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 <u>공용청사등건립기금</u> (이하 “기금”이라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출연금 2~3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 1.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회계출연금 2~3 (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서초구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u>  1. <u>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부지 매입</u> 2. <u>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u> 3. <u>기타 구청장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을 말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u>  1. <u>서초구공용청사등 건립부지매입</u> 2. <u>서초구공용청사등 건립</u>

제정안	수정안
제6조(지방재정법의 준용) (생략)	제5조(지방재정법의 준용) (제정안과 같음)
제7조(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공용및공공용의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구민 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 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청사등건립기금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생략)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 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촉직으로 한다 1. 당연직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 및 각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제15조(운영의보고) (생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제14조(운영의보고)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신설)	<p>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②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③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제16조 (시행규칙) .....	제정안과 같음